

뉴라운드 이슈와 주류산업의 대응

1. 머리말



沈 永 壢
(산업연구원 先任研究委員)

지난 1995년 1월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는 회원국들이 모두 참가하는 이른바 다자간무역협상(a full round of negotiations)은 아직 개최된 바 없다. 다만 WTO 출범 이후에 기본통신 및 금융서비스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관련 주요 교역국가들이 참가한 협상이 개최되어 타결을 보았을 뿐이다.

바로 이 점에서 향후 WTO의 주관 하에 열리게 될 다자간무역협상을 흔히 '뉴라운드' (New Round)라 부른다. 물론 앞으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또 다른 별칭이 붙게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하여 여덟 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이 개최된 바 있었지만, 모두 다 GATT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따라서 뉴라운드는 WTO 체제 하에서 개최되는 첫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인 셈이다. 그만큼 각별한 의미가 없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협상결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상으로 우리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WTO에서 뉴라운드의 전개 전

■ 目 次 ■

1. 머리말
2. 뉴라운드의 전개 전망
3. 뉴라운드의 의미 : WTO의 새로운 지평
4. 뉴라운드의 뉴 이슈들
5. 시사점 및 주류산업의 대응

망을 먼저 살펴보고, 뉴라운드에서 새로 제기될 이슈들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주류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 뉴라운드의 전개 전망

뉴라운드의 출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구축된 다자간무역질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뉴라운드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라운드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는 데에 있다.

대체로 뉴라운드에서 다루어질 협상의제의 범위(scope)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해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시장개방에 대한 추가 개방 이슈다. 공산품의 관세인하 논의와 함께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의 추가개방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공산품의 관세인하 논의는 비단 우루과이라운드를 포함하여 GATT 체제 하에서 전개된 여덟 번의 라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단골 의제이다. 반면에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처음 다루어진 의제인 만큼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WTO 협정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5년 이내에 재검토 및 재협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뉴라운드의 출범과 관계없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위 既設定議題(built-in agenda)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개방 분야와 함께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지금까지

WTO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었던 여타 이슈들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전개될 뉴라운드에서 논의 될 이들 이슈에는 WTO가 21세기에는 단순한 무역규범에 국한하지 않고 무역과 관련되는 문제는 무엇이든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서서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뉴라운드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역시 부문별 협상(sectoral approach)이나 특정 의제나 일정 분야만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미니라운드(clustering approach) 형식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approach)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사실 어느 특정 분야만을 다루게 된다면 수많은 회원국들의 이익과 손실을 균형있게 맞추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뉴라운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상분야를 모두 망라해서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WTO 체제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의 입장이 문제이다.

미국은 포괄적 협상보다는 몇몇 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부문별 협상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운드가 그동안 분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처럼 회원국간에 협상의제의 선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금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4차 WTO 각료 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뉴라운드가 얼마나 빨리 출범할 것인가의 여부는 회원국간에 협상의제의 구체적인 범위가 얼마나 빨리 조율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3. 뉴라운드의 의미 : WTO의 새로운 지평

뉴라운드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분야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노동기준, 무역과 환경,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등을 들 수 있다. 각각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시장경쟁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을 일정한 국제적 수준으로 규율할 것인지,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의 교역을 제한할 것인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을 규제할 것인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정부조달에 있어 부패관행의 규제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이들 이슈는 제각기 완급의 차이는 있지만, 뉴라운드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이다. 대체로 선진국들은 이들 이슈를 협상의 제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 내에서도 이슈에 따라 입장이 서로 다른 분야가 있다. 예를 들면 투자규범이나 경쟁정책 이슈에 대해 미국은 WTO 차원에서의 협상은 소극적이고 그보다 고차원적인 논의의場을 통해 엄격한 규범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개도국들은 WTO 차원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은 그동안 뉴 이슈가 무역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고, WTO가 그 논의를 위한 적절한 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논의를 개시할 정도로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뉴 이슈에 관한 공식논의를 반대해 왔다. 개도국들이 뉴 이슈의 규범제정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이들 분

야에 있어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뉴 이슈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에 입장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이슈가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서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 이슈 가운데 일부가 이번 뉴라운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뉴 이슈를 둘러싼 논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까다로운 이해관계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될 이슈로 남게 될 것이다. 적어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무역질서가 유지되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WTO 체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아무리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철폐한다고 하여도 국가간에 각종 제도와 정책, 관행 등에 차이가 나면 장벽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다룬 분야만으로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분야라면 그 어떤 영역이라도 WTO의 테두리 내에서 국제규범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이슈들은 경쟁조건의 평준화(level playing field)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상 이슈가 단순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이슈들은 여기에서 나아가 시장 내에 주재(market presence)하는 기업에 공정한 활동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market entry)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뉴라운드의 뉴 이슈들

(1) 무역과 투자규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현상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에 더하여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장벽, 즉 투자장벽 또는 영업과 관련된 장벽 등의 제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 연유로 투자자유화를 위한 다자간규범의 제정문제는 1990년대 들어와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 이후 기업의 다국적화와 생산, 기술, 마케팅의 無國境化가 진전됨에 따라 상품과 요소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종래에 주로 국내정책이나 규제영역(regulatory domains)에 속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분야들이 시장 접근의 차원에서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이나 서비스 협정(GATS) 등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도 투자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투자보호규정으로는 그 내용이 충분하지가 못하였다. 이에 선진국들은 OECD를 중심으로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추진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WTO 차원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게 되자 지난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투자작업반' (Working Grou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을 설치하여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WTO 테두리 내에서의 투자규범화 논의를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동 작업반에서는 그동안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가 개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무역과 투자간의 경제적 관계, 기존 국제투자문서와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기초로 기존 국제문서에 있어 공통점 및 차이

점 등의 확인, 투자에 관한 양자간, 지역간 및 다자간 규칙 채택의 장단점, 투자가의 본국과 투자유치국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투자정책에 대한 기준 및 장래의 국제협력과 경쟁정책에 대한 기준 및 장래의 국제협력간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무역과 투자 작업반'은 1997년 6월 이후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데,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는 개도국들과 이를 다자간투자 규범 제정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선진국들간에 명백한 입장 차이가 노정되곤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등은 WTO에서의 다자간투자규범 제정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이 주장하는 다자간투자협정의 공통요소로서는 (i) 투명성,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증대를 협상의 목표로 할 것, (ii) 무차별원칙의 채택, (iii) 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iv) 투자자유화는 GATS와 같은 점진적 방식을 따를 것, (v) 기존 WTO협정과의 조화를 이룰 것, 그리고 (vi) 개발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각국의 규제권한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인도, 파키스탄 및 아세안국가 등 일부 개도국들은 다자간투자규범이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가 없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제공의 의무화는 각국의 경제정책의 수행을 크게 제한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노동력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WTO 차원에서의 투자분야에 관한 다자간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가졌다. 따라서 이들은 WTO에서의 다자간투자규범 제정 협상에 반대하였고, 대신 기존의 투자작업반 수준에서의 검토 작업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다자간투자규범에 관한 WTO의 논의

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의 수렴 문제라 할 수 있다.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제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 그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는 여전히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입장으로 확연히 분리되며, 이에 따라 첨예한 이해 대립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투명하고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국제 투자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2) 무역과 경쟁조건

경쟁정책 논의는 시장 접근에 영향을 받는 시장구조와 영업활동에 대한 것이다.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영업관행과 시장 구조에 의한 시장 접근 장애가 국경장벽보다 더 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도 물론 경쟁조건과 관련된 다수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TRIMs, 지적재산권, 세이프가드, 반덤핑, GATS, 정부 조달 협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기업의 반경쟁적인 행위나 영업관행을 규율하는 경쟁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장 구조와 기업의 영업관행 측면에서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WTO에서는 1996년 제1차 각료 회의에서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을 설치하여,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관계 및 다자간 규범의 형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작업반에서는 그동안 무역 및 경쟁정책의 목적, 원칙, 개념 및

범위와 수단간의 관계, 무역 및 경쟁정책에 관한 기준의 국제문서 및 활동에 관한 분석, 무역과 경쟁정책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WTO 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토의와 조사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임하는 국가마다 입장이 분분하다. 선진국 가운데 유럽국가들은 적극적이나, 미국은 소극적이다. EU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국제카르텔, 회원국 경쟁법의 역외 적용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자간 경쟁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는 다가오는 뉴라운드에서 핵심원칙과 최소한의 실체적 규정에 먼저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WTO는 무역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고 구속적 규범제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입장은 WTO 차원에서 다자간 경쟁규범을 제정하기보다는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양자 및 지역적 차원의 접근방법을 선호한다. 또한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경쟁정책 국제포럼의 형성을 선호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그 이면에 경쟁정책 논의가 반덤핑 이슈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개도국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수한 시장구조 및 기업관행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규범화 논의에 소극적이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규범이 다국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규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개도국의 국내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고 선진국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WTO 차원의 경쟁정책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 법에 의한 폐해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선진

국의 경쟁법 역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괄협상방식 맥락에서 경쟁정책 의제 채택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3) 무역과 노동기준

노동기준에 관한 이슈는 의제의 채택단계부터 선후진국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맞서 있는 분야이다. 노동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배경과 입장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일이다.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논의의 초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s)보다 낮은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 또는 생산국가에 대해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무역규범 내에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 핵심노동기준이란 노동자의 대우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을 말하며, 아동노동 착취금지,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 및 단체교섭권, 고용상의 차별금지 등 4개 분야이다.

문제는 노동기준 이슈를 둘러싼 회원국들의 의도이다. 노동기준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선진국들은 그들의 높은 실업률과 경쟁력 저하가 개도국의 낮은 노동기준을 기초로 한 저임금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다자간규범을 통해 선진국 자신들의 경쟁력 저하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들 특히 후발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WTO에서의 노동기준을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은 사실상 저임금 무역형태의 비교우위를 제거하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라고 보고 있다. 선진국들이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과 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동기에서 노동기준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노동력 착취를 통한 불공정 무역의 방지, 그리고 무역이익의 공정

한 분배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선진국의 입장과 이를 새로운 형태의 위장된 보호주의로 간주하는 개도국의 입장은 확연하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핵심노동기준의 준수가 무역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개도국들은 경제성장만이 노동기준 향상의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WTO 차원에서의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이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기준을 다룰 적절한 기구라고 확인한 바 있다. 즉 핵심노동기준의 준수 및 노동기준의 증진을 위한 ILO의 작업을 지지하며, 고용창출과 노동기준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긍정적 효과가 명백히 인식되고 상호 지지될 수 있도록 ILO의 작업에 협조한다는 데에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것이다. 또한 노동기준의 이행을 빌미로 무역제한조치를 발동하는 것에 반대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들의 비교우위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WTO가 무역과 핵심노동기준간의 관계를 의제로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 이슈에 대한 논란은 그 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미국 및 EU 등은 기회있을 때마다 노동기준 이슈의 논의를 완곡히 제안해 왔다. 특히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 기간 중에는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WTO의 테두리에서 노동기준 이슈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특히 핵심노동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물론 개도국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으로,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의 영향을 받은 홍콩 및 싱가포르 등을 WTO에서의 노동문제의 논의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나머지 대다수 회원들도 노동기준과 연계하여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제재 수단의 행사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노동기준 이슈는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의 하나로 급부상하면서, 뉴라운드의 출범 자체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지난 번 각료회의까지도 노동기준 이슈를 협상의 제외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향후 작업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조차 규정하지 하지 못하였다. 아직까지도 무역과 연계된 노동기준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의대상 및 방향은 물론이고, 토의의 제로서의 채택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4) 무역과 환경기준

WTO에서 환경기준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부터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무역과 환경기준의 상호연계에 관한 문제는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산하에 ‘무역·환경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CTE)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동안 무역환경위원회(WTO/CTE)에서는 환경규제조치의 무역 파급효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 국제환경협약이 정한 무역규제 조치를 WTO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등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밖에도 WTO/CTE에서는 현저한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환경조치와 다자간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 : MTS) 간의 관계, MTS 규정과 환경목적의 부과금·조세 및 기술규정·표준·환경마크·포장·라벨링 등 환경관련 제품요건과의 관계,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환경조치의 투명성에 관한 MTS 규정, MTS의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국제환경협약상 분쟁해결 메커니즘간의 관

계, 시장접근 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대한 환경조치의 영향과 무역에 대한 제한 및 왜곡의 제거에 따른 환경효과, 국내판매금지물품의 수출문제, 지적재산권(TRIPs)과 환경, 서비스무역 및 환경에 관한 결정에서 제시된 작업계획 그리고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환경기준에 관한 논의의 핵심에는 언제나 환경규제 조치가 새로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일부로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외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 관점의 대립이 있곤 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다자간협상의 일부로 다루는 것은 양자협상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협상입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볼 때 환경문제를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은 선진환경기술과 해외자본의 유입이 환경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자율적 환경규제와 시장가격기구를 지향하는 국내 환경개선 노력 또한 시장개방 효과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번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을 별도의 협상의제나 작업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무역자유화와 경제개발 및 환경보호간의 보완성을 상기하면서,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들간의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WTO는 또한 회원국들이 보호주의 목적으로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할 권리를 인정한다고도 천명한 바 있다. 무역과 연계된 환경기준은 앞으로 전개될 뉴라운드에

서 논의될 신 이슈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5) 전자상거래 이슈

오늘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에 대해 아직까지는 그 성격과 분류, 기술적 중립성, 국내규제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교역에 있어서 안정적이고도 활발하게 국제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WTO의 테두리 내에서 국제상거래의 법적 기본규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GATT와 GATS 등 WTO협정 중 어느 협정이 전자상거래를 적용할 것인가 인데, 여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특히 전자전송의 분류문제가 대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전자전송이 상품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이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이다. 그런데 전자전송은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GATS가 전자상거래 적용협정이 되면 GATT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규제, 일반적 예외 및 각국의 양허 내용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수량제한의 금지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다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EU는 전자전송이 GATS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은 서적 혹은 영화와 같이 물리적 대체물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송은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8년 3월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

서는 전자상거래를 서비스의 이동으로 간주하여 GATS의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1998년의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이 사회로 하여금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통상이슈들을 검토할 포괄적인 실무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규정하는 대신에 전자상거래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GATS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전자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 계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작업형태를 사용하거나 또는 수평적 비협상그룹(a horizontal non-negotiating group)을 설치하여 그 작업결과를 제4차 각료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중단되었던 전자상거래 논의는 2001년 초부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작업반에 의해 추진되고, 특별작업반의 작업 결과는 권고사항과 더불어 금년에 개최될 제4차 각료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6) 정부조달의 투명성 이슈

뉴라운드에서는 또한 국제거래 특히 정부구매에 있어 부패행위로 인한 무역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자는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WTO 협정에는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GATT, GATS, 정부조달협정 (GPA)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한 실정이다. 지난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 (Working Group on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국가정책을 고려하여 정부조달관행에 있어

투명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협정에 반영 시킬 요소들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이 뉴라운드의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선언문 초안에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조달 투명성이 다른 뉴 이슈에 비하여 비교적 무난한 이슈이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정부조달시장에 다자간무역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달 절차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EU, 캐나다, 홍콩 등도 원칙적으로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규범의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대체로 여기에 찬동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개도국들은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 아직 합의되지 못한 사항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구속력있는 협정의 채택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조달주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너무 상세하게 지정하면 조달주체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희생되므로 투명성 협정은 '원칙'의 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논의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은 시장접근 및 개방과는 무관하고, 오직 투명성에 대한 규범만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기

초로 금년에 개최될 제4차 각료회의까지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의 채택을 목표로 하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간협정의 첫 단계가 이루어지면 이는 곧 향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5. 시사점 및 주류산업의 대응

새로 제기되는 이슈들이 WTO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첫째 무역과 연관되는 이슈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장차 이슈마다 다자간 규범화 작업으로 연결될 것이며, 셋째 다자간 규범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무역제제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WTO가 세계경제 통합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뉴 이슈들은 차기의 뉴라운드에서 곧바로 다루어질 것인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벌써부터 국제간에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앞으로 뉴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단순한 무역규범이 아니라 사회규범이나 산업규범 등 종래에 국가 고유의 관할권에 속하던 문제들도 논의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및 기업 활동의 각 부문에 있어서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주류업계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의 적용과 주세율 체계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산업판도의 변화를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과거 같으면 조세에 관한 권한은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로 이를 침범한다는 것은 전쟁을 불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WTO 체제 하에

서는 이미 그러한 영역이 파괴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뉴라운드를 계기로 국가주권이 포기해야 할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기업이 활동해야 하는 시장의 범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주류산업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국가주권이 포기하는 영역이 넓혀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만을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때이다.

먼저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에 대비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미 우리 주류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합작투자 활동이 전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또한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위한 협상에 적극 참여한 바 있고, 비록 MAI 협상이 결렬되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으로써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기업회계의 분식과 같은 관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환경의 조성에 장애가 되곤 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간투자규범화의 움직임은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뿐 아니라 국내 업계의 해외투자를 조장하는 여건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내 주류업계의 해외진출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WTO 차원의 경쟁라운드 전개에 대비하여서는 지금부터 제도와 관행을 재점검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경제시대의 유산인 과당경쟁 방지와 거래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으로 각종 카르텔이나 담합을

조장하는 등 반경쟁적 또는 경쟁제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들을 유지해 온 경우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미 OECD에서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고객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s)에 대해서는 그 폐해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각 회원국들이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만일 뉴라운드에서 경쟁조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다루어질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맥주회사의 진입장벽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의 기준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외국의 통상요구도 경쟁조건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최근 민간업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 스스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뉴라운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만하다.

환경이슈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참여방식의 환경마크제도와 포장재 라벨링, 주류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라벨링, 에너지 라벨링 등이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슈에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한편으로는 환경관련규제에 노출되는 제품의 시장접근의 장애, 제품의 생산비용상승, 수출경쟁력의 약화 등 부정적 효과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주류업계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방식을 벗어나 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 이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제품의 전과정(life-cycle)에서 환경에 대한 부하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주류공병의 재활용 및 폐기물 예치금, 분리배출 표시제도, 폐수재활용 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노동조건이나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관련되는 이슈는 주류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 다만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최종 생

산물의 전자상거래보다는 원자재나 중간재의 B2B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논의의 과정과 결과의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The most important tribute any human being can pay to a poem or a piece of prose he or she really loves...is to learn it by heart. Not by brain, by heart; the expression is vital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나 신문에서 마칠 수 있는 가장 귀한 찬사는 그것을 암기하는 것이다. 머리로써가 아니라 가슴깊이 따라서 표현이 지극히 중요하다.

- George Steiner -